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

- 그 식민지에의 적용 -

정 창 석* *

目 次

1. 머리말 -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의 특징
 2. 시대적 배경 - 신체제운동
 3. '대륙병참기지'에서 '대동아병참기지'로
 4. 징병제도의 실시
 5. 정신주의적 특성
 - 1)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의 낭만주의적 특성
 - 2) 일본적 정신주의의 식민지 이식
 6. 일본 제국주의의 무책임성 - 그 전후처리
 7. 맺는말
-

1. 머리말 -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의 특징

일반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대중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밑으로부터의 반혁명 사회운동이었던 것에 비해, 일본제국주의의 그것은 대중적 기반이 결여된 위로부터의 파시즘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적어도 일본제국주의는 대중적 기반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 혹은 이탈리아의 경우 당면의 현실로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립된 국가체제 혹은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강력한 대중운동을 필요로 했지만, 일본제국주의는 기존의 국가체제와 질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 본 논문은 2005년도 연구년 수행 결과물임.

* * 동덕여자대학교 부교수 일본사.

충분했기 때문이다. 일본제국주의는 절대주의 천황제의 확립 이래 가족주의 국가관을 성립시켜 국민 개인 개인이 가치의 근원체라고 믿는 천황에의 자기동일시와 가치의존에 혼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천황의 이름으로라면 언제든지 파시즘뿐만이 아니라 어느 무엇으로든지 자기전환이 가능했던 것이다.

실제로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의 계기를 마련한 1936년의 ‘2·26사건’이 소위 ‘소화유신(昭和維新)’을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에 절대주의 천황제를 깔고 있었던 것을 비롯해, 국회와 정당, 내각, 산업체 등 일체가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 처럼 강제 해산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해산·해체하여 ‘대정익찬회(大政翼賛會)’로 대표되는 소위 ‘신체제(新体制)’라는 이름으로 재편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1931년의 만주사변(滿洲事變), 1936년의 ‘2·26사건’, 1937년의 중일전쟁(中日戰爭)으로 이어지는 군부(軍部)의 독주와 주도권 장악은 역설적이게도 군부를 통제할 수 있는 주체는 군부 밖에 없다는 결과로 나타나, 군국주의 파시즘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그러나 외형적 형태로서 위로부터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여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이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파시즘에 비하여 약체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일본제국주의가 말하는 바, 저 피투성이의 ‘성전(聖戰)’에서 소위 ‘옥쇄(玉碎)’로부터 ‘신평(神風)’, ‘죽창(竹槍)’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펼쳐진 실로 단말마(斷末魔)의 전투와 그것들을 지탱해 준 정신주의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제국주의의 군국주의 파시즘은 1930년대 후반 식민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소위 ‘총동원(總動員) 통치시대(統治時代)’를 열어 한국인에 대한 인적(人的)·물적(物的) 착취와 동원을 끝 간 데 없이 자행하면서도 모든 것을 ‘황민화(皇民化)’와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정신주의로 합리화하였다.

본 논문은 일본제국주의 군국주의 파시즘의 식민지적 적용 실태를 조명하고, 그 정신주의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시대적 배경 - ‘신체제운동(新体制運動)’

소위 ‘신체제운동(新体制運動)’이란 일본제국주의가 1930년대 후반 침략전쟁의 장기화와 일본제국주의가 고립화의 길을 강요받던 격렬한 국제정세 속에서, 체제 변화를 시도하여 나름대로 살아 남기 위해 전개했던 ‘제국헌법의 개정 내지 그것의 탄력적 운용을 포함하는 정치·경제·사회체제의 전면적 변혁을 목적으로 한 운동’¹⁾이다. 이것은 1940년 7월 일본 국민의 중망(衆望)을 업고 등장

한 제2차 고노에내각(近衛内閣)에 의해 전개되었다.

중일전쟁(1937)의 장기화, 유럽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1938) 등 내외의 수많은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 고노에내각은 1940년 10월 ‘대정익찬회(大政翼賛会)’를 성립시켜 정당, 노동조합 등 자주적 조직을 모조리 해체하고, 일본 국민을 그 말단에 이르기까지 부락회(部落会, 농촌)와 마을회(町内会, 도시) 등의 지역조직과 산업보국회(産業報国会) 등의 직역조직(職域組織)에 편입시켰다. 이렇게 과소체제의 재편성에 즈음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전쟁수행 체제의 확립을 노리는 일본 정부와 군부는 소위 ‘신체제운동’을 주도하여 국민의 무비판적인 순종을 강요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 국민은 물론 식민지 민중에 이르기까지 특정 사상과 태도를 강요한 위로부터의 관제민중통제체제는, 파시즘 정당의 주체적 운동을 주축으로 하는 독일과 이탈리아와 같은 밑으로부터의 파시즘과는 판이하게 다른 위로부터의 파시즘이라 불리어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의 독특한 특색이 되고 있다.

당연히 소위 ‘신체제(新体制)’의 성립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 통치정책에도 영향을 끼쳤다. 1930년대 40년대 일본의 식민지 지배정책의 특색은 한국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총동원(總動員) 통치시대’를 열어, 갖가지 형태로 민중을 조직화한 것에 있다. 1938년 7월 조선총독부를 정점으로 하고 ‘애국반(愛國班, 일본의 部落会, 町内会에 해당)’을 최말단으로 하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을 조직, 40년 10월 ‘국민총력조선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으로 개편, 45년 7월 ‘조선국민의용대(朝鮮國民義勇隊)’의 결성에 이른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은 1937년 7월 발족한 일본의 ‘국민정신총동원중앙연맹(國民精神總動員中央聯盟)’을 식민지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여 1938년 7월에 조직되었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 식민지 한국에 있어서의 전쟁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식민지 지배체제를 강화하여, 한국인의 정신생활에서부터 경제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영역에 철저한 통제를 가하기 위한 단체였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 명예총재에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오노 료쿠이치로(大野綠一郎), 전임총재(專任總裁)에 조선군사령관 가와시마 요시유키(川島義之), 전임이사(專任理事)에 전 제20사단장 육군중장 가와기시 후미조(川岸文三)를 임명하는 등, 중앙부서와 중요 요직에는 총독부와 군부의 고관 및 지주, 자본가들을 망라했다.

1)伊藤隆 『近衛新体制』中公新書 中央公論社 1983. 214P.

이 단체는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을 체계화했다. 지도기관으로는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와 간사회, 하부조직으로는 각도에 도연맹, 부(府)와 군(郡)에는 부·군연맹, 읍(邑)과 면(面)에는 읍·면연맹, 정(町)·동(洞)·리(里)에는 정·동·리연맹을 조직하여 도지사와 부윤(府尹), 군수, 도사(島司), 읍면장, 총대(總代), 구장(區長)을 회장이나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공장이나 기업, 회사, 은행, 상업기관, 그 밖의 관공소와 학교 등도 빠짐없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산하의 조직으로 재편하였다.

지방연맹의 최말단에는 10~20가구를 단위로 소위 애국반(愛國班)을 조직하여 1942년 당시에 43만여 개의 애국반이 편성되었다.

조선총독부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조직한 것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 중국 대륙 침략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총독부만의 지배체제로는 대륙병참기로서로서의 식민지 한국의 동원에 한계가 있음을 자각한 결과였다. 조선총독과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의 군부는 매월 정례적인 위원회와 이사회를 열어 한국인의 소위 총동원을 위하여 대책을 협의하고, 그 실천 사항들을 결정하여 산하 각급 조직에 하달하고 이것의 실천을 강요하였다. 이를테면, ‘국민정신총동원총후보국강조주간(國民精神總動員銃後報國強調週刊)’, ‘일본정신발양주간(日本精神發揚週刊)’, ‘근로보국주간(勤勞報國週刊)’ 등 일반 민중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실천과 정신무장 및 동원을 노린 것이었다.

나아가서, 1940년 10월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식민지 한국에 있어서의 ‘신체제운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모체로 한 ‘국민총력조선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을 조직되었다. 이 단체의 총재는 조선총독(朝鮮總督), 부총재는 정무총감(政務總監)이며, 활동기간 6년 동안 ‘반도신체제운동(半島新體制運動)’의 최고봉으로서 한국 민중의 ‘내선일체’와 ‘황민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최후의 발악을 아끼지 않은 단체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국민총력운동을 다음과 같이 선전하고 있다.

“이 끓어오르는 반도(半島)의 애국심이 총독부의 시책과 표리일체(表裏一體)가 되어 조선의 2천 6백만 관민(官民)의 애국적 국민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국민총력조선연맹(國民總力朝鮮聯盟)이다. 이 운동은 1938년 7월 7일 지나사변(支那事變, 중일전쟁) 1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거국일치(挙國一致), 견인지구(堅忍持久), 진충보국(盡忠保國)의 3대 강령과 내선일체(內鮮一體)의 구현과 축진을 목표로 발족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의 활동에서부터 시작되어, 그후 지나사변의 진전과 세계정세의 중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지(內地, 일본)의 대정익찬운동(大政翼贊運動)에 호응하여 1940년 7월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개조·강화됨과 동시에, 물심양면에 걸쳐 전

시 국민생활의 실천에 나선 것이다. 특히 대동아전쟁(1941, 태평양전쟁) 발발 후에는 전쟁의식의 양양(昂揚)과 전력증강(戰力增強)에 초점을 맞추어, 황국신민(皇國臣民)의 도의(道義)의 실천과 수양연성의 강화, 국어보급과 상용(常用), 통제경제의 운영, 저축의 증강, 국채(國債) 소화, 폐품회수 등 모든 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총독부의 행정과 일체가 되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이 내지의 대정익찬회운동과 다른 제1의 특징은, 절대로 정치적 성격을 띄지 않고 어디까지나 황국신민의 도의의 실천과 직역봉공(職域奉公)을 목표로 하는 국민생활의 실천운동이며, 가장 하부 조직에는 내지의 마을회(隣組)에 해당하는 애국반(愛國班)이 조직되어 그 수가 43만에 이른다. 특히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거행하는 궁성요배(宮城遙拜)와 정오의 묵도(默禱)는 내지에서는 여간해서 볼 수 없는 엄숙한 풍경으로 라디오와 사이렌을 신호로, 가정에서 혹은 거리에서, 전원(田園)에서, 기차와 전차 속에서, 그 밖에 모든 직장에서 조선의 전 국민이 궁성을 요배하고, 혹은 호국 영령에게 경건한 묵도를 올리는 것이다.”²⁾

‘국민총력조선연맹’은 1945년 7월 ‘조선국민의용대(朝鮮國民義勇隊)’를 결성하면서 발전적으로 해체되었다.

이러한 행정조직을 비롯해 ‘치안유지법’,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등 각종 법률의 개악(改惡)도 차례차례 주도면밀(周到綿密)하게 행해졌다.

일본제국주의는 1925년 제정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을 1928년에는 ‘신치안유지법(新治安維持法)’으로 개정하여 식민지 한국 민중 탄압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활용하였다. 나아가서 일본제국주의는 사상운동의 형태와 방법이 정세의 변화에 따라 다양화된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이제까지의 규정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41년 3월 ‘개정치안유지법’을 공포하여 5월 시행에 들어갔다.³⁾

새로이 제정된 ‘개정치안유지법’은 종래의 ‘치안유지법’에 비해 그 적용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대되었다. 그 제1장 제1조에 ‘국체(國體)를 변혁할 목적으로 결사(結社)를 조직한 사람 또는 결사의 조직원, 그 지도자의 임무를 맡은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정(情)에 이끌려 결사에 가입한 사람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해 일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2) 朝鮮總督府情報課 『新しき朝鮮』 朝鮮行政協會 1944. 42~43 p.

3) 京城日報社刊 『朝鮮年鑑』 京城日報社, 1944. 288p.

제2조 이하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이 법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문(条文)으로, 그 규정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애매하여 집행관의 자의적 재량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개정치안유지법’에서는 예방구금제도(予防拘禁制度)를 규정하여 석방 혹은 보호감찰 중의 인물에 대하여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구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험사상’과 ‘불온사상’을 품었다고 생각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법적 구속이 가능했으며, 출옥한 사람에 대해서도 ‘범죄의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서 자유자재로 체포와 구금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해악 규정을 이용하여 군부와 헌병 및 경찰은 한국인의 일거일동(一挙一動)을 감시했던 것이다.

나아가서, 일본제국주의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을 제정하여 중일전쟁 및 이후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식민지 한국에서의 인적(人的)·물적(物的) 동원을 강요했다. 또한 이 ‘국가총동원법’을 실행하기 위한 각종 하위법들이 제정되어, 그야말로 이 ‘국가총동원법’은 일본제국주의 파시즘 체제의 근원적인 법률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제국주의는 식민지 한국의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을 위해 각종 동원령, 지원병제, 징병제, 징용(徵用), 강제연행 나아가서는 ‘從軍慰安婦(從軍慰安婦)’의 강요까지 자행했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게 하기 위한 통치방침, 소위 ‘내선일체’와 ‘황민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소위 ‘황국신민의 서사(皇國臣民ノ誓詞)’⁴⁾ 혹은 ‘창씨개명(創氏改名)’ 등의 강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제국주의는 주로 이데올로기 및 문화면으로부터 한국 민중을 강제적으로 동화시켜 일본인의식을 주입, 국책에의 협력과 순종을 강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병합(併合) 이래의 기본지배정책인 ‘황민화’와 ‘내선일체’라는 기존의 기본노선 위에 총동원체제를 갖춘 후, 1940년 10월 당시의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조직을 시작으로 식민지 한국에 있어서의 ‘신체제운동(新体制運動)’을 선언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에 있어서의 소위 ‘신체제운동’이란 결국 한국인에 대한 ‘황민

4) 1937년 10월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시오하라 도키사부로(塩原時三郎)의 발안으로 제정된 것으로 其一과 其二가 있었다. 其一은 소학교용, 其二는 상급학교 및 일반인용이었다.

〈皇國臣民ノ誓詞〉(其一)

一. 私共ハ大日本帝國ノ臣民デアリマス。
一. 私共ハ互ニ心ヲ合セテ天皇陛下ニ忠義ヲ尽シマス。
一. 私共ハ忍苦鍛鍊シテ立派ナ強イ國民トナリマス。

〈皇國臣民ノ誓詞〉(其二)

一. 我等ハ皇國臣民ナリ忠義ヲ以テ君國ニ尽セン。
一. 我等皇國臣民ハ互ニ信愛協力シ以テ團結ヲ固クセン。
一. 我等皇國臣民ハ忍苦鍛鍊シカヲ養ヒ以テ皇道ヲ宣揚セン。

화'와 '내선일체'의 강행이며, 그 기반 위에서 일본제국주의 전쟁수행을 위한 총동원체제의 완비였던 것이다.

3. '대륙병참기지(大陸兵站基地)'에서 '대동아병참기지(大東亞兵站基地)'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한국에 대한 물자동원정책은 1937년 발발한 중일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소위 '대륙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1938년 '조선총독부시국대책조사회'를 발족시켜 제1차 생산력확충계획을 강행, 식민지 한국의 생산력 증강을 강화했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제국주의는 확고한 군수물자의 확보를 위해 제2차 생산력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소위 '대동아병참기지'로서 식민지 한국의 자립적 경제로의 전환을 피하여 일본경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일본제국주의는 침략전쟁의 확대에 따라 제공권과 제해권의 확보를 위해 선박, 항공기, 철강, 석탄, 경금속 등 중공업 분야의 육성에 전력을 기울여, 식민지 한국에 있어서의 생산력 증강의 중점적인 대상은 이들 군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자원의 확보에 놓여져 있었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여 식민지 한국에 있어서의 인적(人的)·물적(物的) 착취를 강화한 일본제국주의는 1941년의 태평양전쟁을 계기로 이른바, '대륙병참기지'에서 '대동아병참기지'로의 전환을 표방하며, 12월 '물가통제령'을 발표하여 일반물자 및 생활필수품에 대한 배급통제를 확대하였고, 1943년 이후에는 배급통제마저 한계에 부딪치면서 생활필수품의 소비를 철저히 통제하고 금지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전쟁 열기 속에서 식민지 한국은 선택의 여지 없이 전시체제로 돌입하였던 것이다. 일본제국주의는 전시체제하의 국민생활 일체에 대한 통제도 게을리하지 않아 내각정보국 결정으로 '전시국민생활십계(戰時國民生活十戒)'를 발표하기도 했다.

1. 예복(禮服)은 일체 폐지하고 평상복을 입을 것이며, 외출시에도 화려한 옷을 입지 말 것.
2. 한 푼의 돈을 쓸 때에도 나라를 위하여 쓴다는 마음으로 낭비하지 말 것.
3. 혼례 피로연, 팔월 대보름, 정초의 선물은 단호히 폐지할 것.
4. 유행하는 의복, 가구를 구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아끼고 저축하여 국가에 봉

사할 것.

5. 밖에서의 환락을 추구하지 말고 가정생활을 안락하게 지낼 것.
6. 한 개의 못(釘)이라도, 한 조각의 종이라도 아끼는 미풍(美風)을 양성할 것.
7. 식탁은 간소하게 차릴 것이며 당근의 잎, 채소의 뿌리까지도 조리하도록 궁리할 것.
8. 집 안팎의 빈터에는 채소를 가꿀 것이며, 토끼나 닭을 사육하여 최대한 이용할 것.
9.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일 분 일 초라라도 충분히 사용하여 규칙적인 생활을 할 것.
10. 술과 담배는 끊지 못하면 절주(節酒), 절연(節煙)을 실천할 것.”⁵⁾

이렇게 전시동원체제를 확립한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한국의 성격과 사명을 다음과 선전하고 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 전선에 보내는 보급의 확보에 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전선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보급을 확보할 수 있는 병참기지의 건설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반도가 대륙병참기지로 불리는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우선 지리적 조건은 말할 것도 없이, 시정(施政) 30여년의 노력 위에 쌓아 올린 조선(朝鮮)의 실력이 산업·경제·식량·교통 그 밖의 모든 부문에서 자활능력의 확보와 동시에, 나아가서 전선에의 보급력을 배양하여 거의 무한대로 매장된 지하자원의 종류와 양이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내에서는 얻을 수 없는 물자를 산출하고 있고, 그것을 증산(增産)하여 공업화할 수 있는 저렴한 전력과 비교적 여유가 있는 노동력을 지니고 있다.

그 위에 타오르는 애국의 지정(至情)과 대동아건설의 성업(聖業)에 그 중핵적(中核的) 지도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영광스런 희망에 불타, 지금이야말로 성은(聖恩)에의 보답을 맹서하는 2천 5백만의 조선동포가 있다. 만주사변이 그 결의를 촉진한 계기가 되었다면, 지나사변(支那事變)이야말로 병참기지 조선의 성격과 사명을 명확히 결정한 역사의 한 페이지였던 것이다.

나아가서,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으로의 새로운 발전과 공영권 건설의 진전은 조선의 병참기지로서의 사명을 일보(一步) 전진하여 더욱 더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요청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즉, 당면한 우리 나라의 결전적 전력(戰力) 증강에 즈음하여, 남방(南方) 점

5) ‘戰時國民生活十戒’·『總動員』第1卷 3号, 1939. 21p.

령지의 풍부한 자원도 선박 및 기타 사정으로 지금 당장 국내생산에의 기여를 기대할 수 없는 이때에, 조선이 가진 특수물자와 노동력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가중되어, 병참기지 조선의 성격이 소위 대륙병참기지에서 더욱 더 전진하여 대동아병참기지로써의 새로운 사명을 짊어지게 되었던 것이다.”⁶⁾

식민지 한국에 있어서의 전시체제의 확립과 더불어 인적·물적 동원과 착취를 강요한 일본제국주의는 한국인에 대하여, ‘대동아의 중핵(中核)’으로서의 역할과 ‘대동아의 지도적 지위(地位)’를 약속한다는 허울 좋은 선전을 멈출 줄을 몰랐던 것이다.

4. 징병제도의 실시

일본제국주의는 1938년 3월 ‘조선인육군특별지원병령(朝鮮人陸軍特別志願兵令)’을 공포하여 4월부터 실시했다. 이 법령을 공포하면서 조선총독부는 도지사회의를 소집하여 ‘통치의 목표는 반도(半島)의 일본화(日本化) 즉 내선일체의 구현에 있다.’며, ‘지원병제도의 실시는 지금 그 목표에 도달했다’⁷⁾는 것을 의미한다고 선전했다.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전선이 중국 동북지방에서 중국 본토, 동남아시아, 태평양으로 확대되자, 병력의 보충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의는 1942년 7월 ‘해군특별지원병제도’를 공포하고, ‘조선총독부해군지원자훈련소’를 설치하여 한국인 지원자를 수용하여 훈련시켰다. 1942년 5월에는 일본의 각의(閣議)에서 식민지 한국에 대한 징병제도의 실시를 결정하였고, 동년 10월 이에 호응하여 조선총독부는 그 예비단계로 ‘조선청년특별연성령(朝鮮靑年特別練成令)’을 발표한다. 이 법령은 제1조에 ‘본령(本令)은 조선인 남자 청년에 대하여 심신의 연성(練成)과 훈련을 실시하여 장래 군무(軍務)에 복무할 때 필요한 자질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근로에 적응할 수 있는 소질을 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⁸⁾는 것을 명확히 하여 징병제 실시를 위한 포석을 다졌던 것이다. 한국인의 병력 동원이 확대된 전선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강제동원을 위하여 소위 ‘연성령’ 제18조에 ‘연성을 받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성을 거부할 경우, 구류(拘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⁹⁾는 조

6) 朝鮮總督府情報課 『新しき朝鮮』 朝鮮行政學會 1944. 27~28p.

7)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 朝鮮總督府 1940. 803p.

8) 京城日報社刊 『朝鮮年鑑』 京城日報社, 1944. 64p.

항으로 의무제를 실시하여 강제 동원을 자행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43년 8월 징병령을 공포, 1944년 4월부터 특별연성소에서 훈련을 받은 청년들을 포함하여 징병 대상자에 대한 징병이 강행되었다. 징병제의 실시에 즈음하여 일본제국주의는 ‘병역의무는 선량(善良)한 황민(皇民)만이 누릴 수 있는 지고(至高)의 명예이며, 동시에 지상(至上)의 특권이다.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이 특권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성전(聖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¹⁰⁾고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징병제 실시에 임하여 조선 총독부는 ‘징병제도 실시에 이르러 내선일체의 정책은 그 절정에 다다랐다. 과거의 모든 노력은 이것을 위한 것이었다’¹¹⁾는 정치선전을 계속했다.

“1942년 5월 9일 드디어 2년 후의 1944년도 적령자(適齡者)부터 조선에 대망의 징병제 실시를 결정했다. 이러한 발표가 떨어지자마자 전 반도(半島)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감격을 폭발시켰다. 이날, 조선 전국 방방곡곡(坊坊曲曲)은 물론, 만주, 중국 등의 조선 동포는 일제히 신사(神社)로 달려가 보고제(報告祭)를 올렸으며, 그 자리에서 발신된 감사와 결의를 표명하는 전보(電報)가 총독의 책상 위에 산처럼 쌓였다. 특히 이 빛나는 영예를 먼저 누리게 될 학도와 청소년들은 ‘이것으로 우리도 드디어 나라의 방패가 되어 국가에 봉공(奉公)을 다하게 되었다.’며, 벽찬 희망에 불타 장래의 강건한 병사가 되기 위하여 주야로 심신을 단련하여 불러주는 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¹²⁾

일본제국주의는 이러한 강제 징병을 통하여 일본 및 동남아시아 방면에 30여 만명, 한국 국내에 71만 3천 7백여명, 그 밖의 군속(軍屬)으로 3만여명, 합계 104만 3천 7백여명을 연행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일본제국주의 패망의 1945년 8월까지 지원병, 학도병, 징병 등으로 연행한 한국인은 육군 186,980명, 해군 22,299명 계 209,279명이었고, 陸海軍屬이 154,907명에 달했다.¹³⁾ 또한 이렇게 연행된 한국인은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분산 입대와 분산 배치의 원칙을 세워, 집단적 반항과 탈주와 정보의 교환을 봉쇄하였으며, 위험한 전투에서는 항상 첩병의 역할과 선두 행동을 강요하였다.

9) 위와 같음.

10) 京城日報社刊 『半島學徒出陣譜』 京城日報社, 1944. 75~76p.

11) 朝鮮總督府情報課 『新々朝鮮』 朝鮮行政學會 1944. 51p.

12) 위와 같은 책. 50~51p.

13) 精神文化研究院 『1995년 해외 희생자 유해현황 조사사업 보고서』 精神文化研究院, 1995. 81~82p.

5. 정신주의적 특성

1)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의 낭만주의적 특성

낭만주의는 본래 중세 유럽 귀족들의 자기과멸적 연애담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기독교적 신의 절대적 계율이 지배하고 있던 중세의 유럽사회에서는 자유연애 내지는 기혼자의 불륜은 신의 이름으로 엄격하게 단죄되었다. 이러한 에로스적 정념은 인간사회를 신의 질서가 조화된 현현(顯現)으로 본 중세사회에 있어서 악이 유발하는 하나의 유혹 혹은 악이 가져다 주는 쾌락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이윽고 이러한 비련은 철저한 자기파괴(자살, 파멸, 도피 등)에 의해 복수당하고 신의 질서인 인간사회는 평온을 되찾는 것이다. 철저한 자기파괴 혹은 자기부정에 의한 조화의 회복, 이것이 로맨스인 것이다. 따라서 로맨스라는 것은 스스로의 내부에 현실에 대한 강렬한 부정과 그 변혁에의 강한 의지를 내재함으로 인해 아이러니로서의 폭발적인 실천력과 에로스적 정념으로서의 반이성 내지는 반합리주의를 겸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윽고 19세기에 들어와 전형으로서의 고전주의, 합리주의로서의 계몽주의에 반기를 들고 자아적(自我的) 감정의 완전해방, 전인간적 생명력의 추구 등을 기본으로 하는 낭만주의를 낳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현실과의 충돌을 기정사실화하여 말하자면, 사회의식보다는 개인의식, 자유의 예찬, 개인과 감정의 강조, 전통에의 반항 혹은 파괴, 무한과 절대에의 동경, 상상력의 중시 등은 그 적극적 측면이요, 현실도피, 자기도취, 신비주의, 공상, 비관주의 등은 그 소극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독일낭만파의 슐레겔(Friedrich von Schlegel, 1772~1829)은 피히테(Johann G.Fichte, 1762~1814)의 철학으로부터 개인의 가능성을 예술수법으로서 추출해 내 낭만주의적 예술개념을 제창하게 된다. 피히테가 세계를 초월적 자아의 소산으로 본 것에 대해 슐레겔은 개념적 배치전환을 통하여 현실을 자아의 활동의 소산으로 보았다. 이때 현실에 대한 자아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부단의 자기파괴와 자기초월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현실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자아의 자유는 자기부정과 자기파괴의 장엄한 잣더미 위에 서 있는 것이 된다. 현실부정과 자기파괴를 통한 자유에의 비약, 이것이 낭만적 아이러니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유에의 의지가 순수하면 할수록 절대적 가치 혹은 미적 대상에 대한 동경과 갈망이 강한 반면, 그 만큼 병적인 환상과 광신적 몰아현상의 정신적 모순상태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Hegel 『美学』). 따라서 낭만적 아이러니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모순 혹은 패배에 의한 무력감과 상실감 등을 심정적 정신에 의지하여 현실 혹은 대상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정신적 보상을 구하는 심적 상태인 것이다. 그리하여 현실에 대한 태도는 일차적으로 조롱, 멸시, 회롱 등의 비합리적이고도 부정적인 자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낭만주의 발생의 기반이 19세기의 유럽에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그 정신적 상황 내지는 사상적 경향이 그대로 드러난다. 산업혁명의 종료와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달로 근대화되어 가는 인간사회, 도시화의 진전으로 파괴되어 가는 자연공동체, 기계화에 의한 인간소외, 개인주의의 만연과 세속화의 길을 걷는 인간정신 등 근대문명에 의한 총체적 모순과 부조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유럽적 현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유럽의 19세기는 벌써 혁명을 배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럽의 낭만주의가 근대적 개인의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 기반에는 감정을 매개로 하는 상상력의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휴머니즘과 동등하게 니힐리즘이 내재하여 근대적 현실을 추악한 것으로 보아, 그것에 대한 대응충족 혹은 변혁의지로서의 정신적 조화가 이룩된 이상사회에의 갈망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개인(혹은 個)과 전체의 조화를 기저음으로 하는 유기적 세계관을 형성시켜 근대사회에 대한 대항의식으로서 잃어 버린 것 혹은 사라져 가는 자연공동체에의 정신적 귀의를 어쩔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즉 이익사회(gesellschaft)로부터 공동사회(gemeinschaft)로의 귀환이라는 환상인 것이고, 복고적 전통의 회복에 의한 현실의 변혁, 나아가서 개인의 유기적 전체로의 비약의 꿈인 것이다.

그러나 낭만주의가 근대의 산물인 이상 낭만파가 말하는 근대인에 의한 이상사회라는 것은 본래의 본질을 잃어 버린 가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단지 상상력 속의 환영인 것이다. 낭만파는 물론이고, 근대인은 벌써 근대정신에 깊숙히 침윤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낭만적 아이러니이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정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믿는 것, 패배를 승리라고 믿는 것, 거기에 정신적 비약이 있는 것이다. 패배를 전제로 하는 도전이기에 죽음에의 비약과 광신적 몰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낭만주의가 가지고 있는 현실 변혁의 의지로 인해 파생된 유기적 세계관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를 쓰러뜨리고,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마르크스주의와 국민적 전통을 미화하여 민족적 우월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전체주의로서의 파시즘과 통하는 통로를 내포하고 있었다. 저 ‘일본낭만파’가 독일낭만파에 동경심을 품고, 1930년대라는 ‘시대폐색(時代閉塞)’을 배경으로 하여 마르크스주의로부터의 전향(轉向)이라는 탈출구를 빠져 나와 현실과 마주했을 때, 거기에는 ‘세계신질서’를 외쳐대는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일본적 전통이라는 이름의 국학(国学)에 기반을 둔 복고적 일본주의에의 개구명이 보였고, 개구명

의 저편에는 일본고전 내지는 일본미술이라는 ‘언령(言靈)’의 세계가 손짓하고 있었으며, ‘국체(国体)’의 온존자로서의 자연존적 공동체도 어른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로부터의 패배에 대한 향수와 전향으로 인한 배반자의식, 그리고 반근대의 낭만주의자로서의 변혁의지 등을 공유하는 ‘일본낭만파’의 심정적 세계는 ‘신무위업(神武偉業, 神武는 신화상의 일본 초대천황)’의 조국정신(肇國精神)이라는 ‘팔굉위우(八紘爲宇)’를 실천적으로 체계화시킨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성전(聖戰)’논리를 날조해 낸 군국주의 파시즘의 세계와 통하는 기반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실제로는 지배와 굴복의 관계였지만 ‘일본낭만파’의 자발성을 문제로 하면 이렇게 된다). 마르크스주의에 의한 혁명보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세계재편이 훨씬 웅대할지도 모른다, 또한 소위 ‘성전’의 완수야말로 세계문화 창조의 지름길일지도 모른다는 심정적 내부굴절은 ‘일본낭만파’의 지적 모험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일본낭만파’의 정치주의에의 아이러니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선 죽음에의 비약, 내셔널리즘에의 탐닉, ‘성전’의 예찬, 병적 정신주의로서 구체화된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새로운 정신의 혼돈과 미래의 상태와 파괴와 건설을 동시에 확보하는 자유로운 일본의 아이러니, 나아가서 아이러니로서의 일본’¹⁴⁾이라는 야스다 요주로(保田与重郎)의 발언은 다분히 암시적이다. 그러면 ‘일본낭만파’는 파괴로서의 ‘성전’의 승리와 건설로서의 복고적 일본주의의 실현을 현실적으로 믿고 있었을까? 그러나 ‘일본낭만파’에게 있어서 동기는 환상의 탐닉과 악마적 인식이었으므로 결과는 아무래도 좋았던 것이다. 그 자체가 벌써 아이러니이며 패배의 예감이었기 때문이다. 패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도전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었으며, 파시즘으로의 정신적 비약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낭만파’의 정신적 기저는 나치즘의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무궁동(無窮動)에의 숙명¹⁵⁾으로부터 오는 허무주의인데 비해서, ‘우리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패배의 필연¹⁶⁾으로부터 오는 허무주의인 것이다. 어쨌든 ‘일본낭만파’ 스스로가 소리 높여 비판하고 있는 근대 일본의 소시민적 왜소성, 향락적 탐미주의, 현실도피적 이상주의 등의 제요소 자체가 결국은 절대주의 천황제의 주박에 의하여 근대적인 개인의의식이 사회의식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차단당한 결과로부터 나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찰함이 없이, 오히려 천황주의에 귀의함에 의해 그것들의 극복을 꾀했다는 모순은 그것 또한 아이러니 일 것이다.

14) 保田与重郎 ‘我国に於ける浪漫主義の概観’ 『コギト』 1934. 12月号, 40 ~ 41 p.

15) 丸山真男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未来社 1988. 301p.

16) 橋本文三 『増補日本浪漫派批判序説』 未来社, 1978. 43p.

2) 일본적 정신주의의 식민지 이식

일본에서는 1935년 미노베 다쓰끼찌(美農部達吉)의 ‘천황기관설(天皇機關說)’을 배격하는 과정에서 ‘국체명징운동(国体明徴運動)’이 성행하여 이후 ‘국체의 명징’은 국민 도덕의 기준으로서 맹위를 떨치게 된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문부성(文部省) 발행의 『국체(国体)의 본의(本義)』이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万世一系)의 천황(天皇) 황조(皇祖)의 신칙(神勅)을 받들어 영원히 이를 통치한다. 이것이 우리 나라의 만고불역(万古不易)의 국체(国体)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대의에 기반을 두고 일대가족국가(一大家族国家)로서 억조일심(億兆一心) 성지(聖旨)를 받들어 능히 충효의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체는 우리 나라 영원불변의大本(大本)이며, 우리 나라의 역사(国史)를 관통하여 광채를 발하고 있는 것이다.’¹⁷⁾

여기에는 주권자로서의 천황과 국체의 신수설(神授說), 그리고 천황제의 가족주의관 등이 규정되어 있고 동시에 천황제의 절대성과 역사성이 표명되어 있다. 이것은 학사원(学士院) 편찬의 『제실제도사(皇室制度史)』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우리 나라 개벽 이래 군신(君臣)의 도리가 엄격하게 정해져 황위(皇位) 계승은 황통(皇統)을 통해 이어지며 신하된 몸으로 군(君)이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군(君)은 민(民)을 공민(公民)으로서 자비로 대하고 민은 군을 살아 있는 신(現人神)으로 받드는 것이다. 또한 국가는 하나의 가족으로서 황실과 신민과는 근원을 같이 하는 분파(分派)이며, 신민은 황실을 국가의 종가(宗家)로 우러러 보고 군민(君民)으로 하여금 부자(父子)의 친목을 겸해 충효일여(忠孝一如), 상하상친(上下相親), 군은 민을 자애함을 덕으로 하고 민은 일심으로 군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신념과 국민적 정조(情操)는 오로지 우리 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나라의 국체가 만방무비(万邦無比)한 원인이며 국체의 본의(本義) 또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¹⁸⁾

이러한 절대주의 천황제의 정신주의는 식민지 한국에도 그대로 이식되어 한

17) 文部省 『国体の本義』 文部省 1937. 9p.

18) 大日本帝国学士院編纂 『皇室制度史』 第一卷 大日本帝国学士院 1937. 126p.

국민을 억압하고 규정하는 도덕률로 강요되었다. 당시 조선총독부 정보과 조사관 이시모토 세시로(石本清四郎)는 ‘도의조선(道義朝鮮)’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래 팔굉일우(八紘一宇)의 팔굉이란 전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우란 일가족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가 목표로 하는 것은 대동아 내지는 전세계를 묶어서 하나의 커다란 가족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건설하고 있는 신질서는 세계 전인류를 우리의 가족으로 포용하여 우리의 자식과 형제로 삼아 각각 행복하게 살게 하자는 것이다 ………”

일본의 고대신화에서는 팔대주(八大洲)의 국토도 인민도 전부 황실의 선조이신 이자니기노미코토와 이자나미노미코토가 낳았다고 되어 있다. 즉 황실과 국민, 황실과 국토, 국민과 국토의 관계는 부자 형제의 가족관계이며, 원래부터 일체였다고 보여지므로 단지 인간관계에서만 아니라 인간과 산천초목까지도 우리의 가족이고 일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그리하여 국민은 끊임없이 자기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봉사의 길을 걸으며 국내의 여러 체제상으로도 인간 최고의 도의정신을 확립하여 우선 안으로부터 도의국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황도문화권(皇道文化圈)의 일환(一環)인 우리 조선을 이러한 도의적 수련을 통하여 정화하고 반도의 천지에 순연한 도의를 확립하여 대동아공영권내의 모범적인 지역으로 성장하는 것이 도의 조선 확립의 근본 이념인 것이다.”¹⁹⁾

한국인은 물론 산천초목까지도 가족으로 보는 가족주의 천황제는 식민지 한국에 대해서도 그 허위적인 무한포용성과 시혜의식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것은 물론 한국지배의 이데올로기에서 유출된 것이나 무조건적인 한국인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지배정책으로서의 ‘황민화’와 ‘내선일체’는 억압기조와 차별구조로서의 자기폐쇄성과 배타성 그리고 자기우월성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그것의 노골적인 표현이 소위 ‘국체의 명징’인 것이다.

“국민 도덕의大本(大本)은 국체관념의 명징에 있다. 특히 반도에 있어서 이것을 철저히 하는 것은 조선의 동포를 정신적으로 향상시켜 제국 신민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기본 조건이며 광명과 이상을 키우는 심적 근원이다…… 조선은 거듭되는 역성개조(易姓改朝)의 변천을 거치는 동안 국체와 국민이 항상 동요하고 인심이 혼미하여 일단 외환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자주독립의 의기를 상실하여 왔다. 특히 18·9세기에 이르러 반도는 열강 세력의 각축장으

19) 『朝光』 1942. 9月号. 27~29p.

로 변하여 드디어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던 것이다 …………… 이때에 광구(匡救)하고 해결한 것이 일·한병합이었다. 즉 조선의 민중이 일본의 만고불역(萬古不易)의 국체정신의 대산하(大傘下)에 들어가 구천만이 다 함께 제국의 구성분자로서 국체관념을 파지(把持)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이천만 민초(民草)를 구하고 번영하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²⁰⁾

이와 같이 식민지 한국에 있어서의 ‘국체의 명징’은 일본제국주의의 ‘만방무비한 국체’를 한국인의 도덕 기준으로 강요하면서 한국인의 내면성까지도 규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 한국에 소위 ‘국체의 명징’을 가져와 한국인의 정신 내면까지를 동화시키려 한 것은 군사력에 의한 지배와 피지배라는 힘의 논리를 도덕적 합리화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식민지 한국에 있어서 일본제국주의의 이러한 모순을 보완하는 것이 소위 ‘내선일체’의 논리이다.

‘내선일체’란 식민지 지배권력에 의하면 ‘선조(先祖)의 혈연적 연계성에 기반을 둔 필연적이고도 발전적인 환원’이라 했다. ‘혈연적 연계성’을 꾸밈으로써 한국 지배의 정당성과 ‘황민화’ 및 그것에 수반되는 문제의 필연성을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혈연적 관계를 바탕으로 깔고 소위 ‘내선일체’는 ‘황민화’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고 ‘황민화’는 ‘내선일체’에 의해 그 결실을 맺게 된다는 논리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황민화’가 완수되지 않으면 ‘내선일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역으로 ‘내선’은 ‘일체’이기 때문에 일본제국주의의 한국인에 대한 ‘황민화’의 요구는 영구히 계속되는 것이다. ‘내선일체’는 ‘황민화’의 원인이며 그 과정이고 최종적 결과, 도달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양두일신(兩頭一身)의 지배논리는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천 8백만 조선동포가 언제 야마또민족(大和民族)과 동등하게 될 수 있는가. 한 마디로 조선동포 스스로가 완전히 황국신민이 되는 그날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인 것이다. 즉 이 대동아 전쟁을 어떻게 싸워 나가며, 어떻게 하면 일체를 군국(君國)에 바칠 것인가를 실천하는 시급적인 것이다. 모든 것을 군국에 바쳐 전쟁을 싸워 이겨 승리를 맞이하는 그날이야말로 명실공히 영예로운 대동아의 중핵적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을 것이다.”²¹⁾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완전한 황국신민’의 다음에는 ‘대동아의 중핵적 지도자

20) 梁村奇智城 『国民精神總動員運動と心田開發』 朝鮮研究社 1939. 75~78p.

21) 朝鮮總督府情報課 『新々朝鮮』 朝鮮行政學會 1994. 82p.

로서의 지위'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제국주의의 한국인에 대한 무한한 요구의 '미끼'로서 '대동아의 중핵적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운위(云謂)하는 정치선전을 계속했던 것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일본제국주의의 정신주의적 기저(基底)는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정신을 그대로 흉내내며 확대된다.

서양인이 서양 이외의 세계에 대해 저 키플링(Joseph R. Kipling, 1907년 노벨문학상 수상)의 '백인종의 부하(Whitemen's Burden)'²²⁾를 선전한 것을 모방하여, 일본인은 동양인에 대한 '일본인의 부하(Japanese Burden)'을 자처했다.

“우리 야마토(大和) 민족은 스스로 참칭(僭稱)하여 황인종의 수장이 된 것이 아니다. 우리 야마토 민족의 눈에는 인류는 있지만 인종은 없다. 백인종, 황인종 같은 피상적인 차별은 입에 담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 원하지 않더라도 세계 2대 인종의 하나인 황인종은 누구라도 우리 야마토 민족을 숭배하지 않는 자가 없다. 단지 지나(地那), 조선, 삼(타이) 등 황인종 뿐만 아니라 인도, 페르시아, 아라비아, 이집트, 터키 등 무릇 백인종에 가깝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막론하고 각 인종들이 한결같이 야마토 민족에게 그 희망을 맡기려 하는 표적이 되고 있다. 나는 일로전쟁(日露戰爭)이 세계의 표면에 흩어져 있는 백인종 이외의 인종에게 엄청난 감화를 주었음을 무시할 수가 없다.”²³⁾

일본인은 동양을 벗어나 서양인의 대열에 참가하여 서양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철저한 서양인의식 위에서 동양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굴절과정에서 일본인의 민족적 우월성의 주장은 필연적인 귀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민족은 세계의 민족 역사 전람회에서 최우등상을 탈 만한 자격을 갖춘 민족이다. 그 강대한 섭취력에서 특히 황실을 중심으로 결합할 수 있는 유기체적인 탁월성에서 최고로 존귀한 명예와 권위를 가진 민족이다.”²⁴⁾

이 일본민족 우월론이 동양에 대한 '지도(指導)'와 '해방(解放)'으로 포장되어 '침략(侵略)'과 '지배(支配)'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기만논리로 발전해 갔던 것이다.

22) Rudyard Kipling. “The Whitemen's Burden : The United States & Philippine Islands, 1899.” Rudyard Kipling's Verse : Definitive Edition(Garden City, New York : Doubleday, 1929).

23) 徳富蘇峰 ‘黄人の重荷’, 草野茂松編 『蘇峰文選』 民友社, 891p.

24) 後藤新平 『日本膨脹論』 大日本雄弁会, 1924. 162~163p.

6. 일본 제국주의의 무책임성 - 그 전후처리

세계제2차대전에서 연합국의 전쟁범죄정책은 독일 패망 후의 1945년 7월의 포츠담회담과 병행하여 열린 런던회의에서 확정되었다.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의 정부대표가 모인 런던회의는 1945년 8월 8일 ‘유럽 추축국의 주요 전쟁범죄자의 소추 및 처벌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의 일환으로 채택된 ‘국제군사재판소헌장’은 전쟁범죄자의 개념과 범위를 정했다. 종래의 ‘통상적인 전쟁범죄(B급)’ 이외에도 전쟁범죄의 개념을 확대하여 침략전쟁의 계획·준비·개시·수행 등의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하는 ‘평화에 대한 전쟁범죄(A급)’와 전쟁 전 혹은 전쟁 중 일반인에 대한 살해·학대 등 비인도적 행위를 처벌하는 ‘인도(人道)에 대한 전쟁범죄(C급)’를 추가하여 국제군사재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²⁵⁾

이 협정에 따라 유럽에서는 1945년 11월부터 46년 10월까지 ‘뉴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이 열렸고, 극동에서는 1946년 5월부터 48년 11월까지 ‘극동국제군사재판(極東國際軍事裁判, 東京裁判)’이 열렸다.

‘극동국제군사재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천황의 전쟁범죄자로서의 기소 여부였다. 일본 점령의 주도권을 장악한 미국은 국내는 물론 연합국과 국제적인 여론이 천황의 전쟁범죄자 지명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통치의 원활화를 위해 천황제를 유지하고 이를 이용한다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 ‘극동국제군사재판’에 참가한 10개국 중 검찰국에 천황의 기소를 제기한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뿐이었다.²⁶⁾

‘극동국제군사재판’은 결국 천황을 기소 면제한 상태에서 주도적 ‘국가 원수’가 없는 국가주의자들의 ‘공동모의(共同謀議)’로 결론지었다.

천황이 전쟁범죄자에서 면제된 극동국제군사재판 도중 천황의 소극적인 전쟁책임 추궁의 방법으로 히로히토의 퇴위(退位)가 논의되었으나²⁷⁾, 실현되지 않았다.

이 재판에서 ‘평화에 대한 전쟁범죄(A급)’ 대상자 28명이 기소되어 교수형 7명, 종신형 16명 등 도중에 옥사한 2명과 정신이상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5) 栗屋憲太郎 『東京裁判論』 大月書店, 1994. 26-27p.

26) 오스트레일리아가 제출한 전범목록에는 7번째에 히로히토가 올라 있다(栗屋憲太郎, 앞의 책. 201p.)

27) 쇼와천황의 퇴위 논의는 세 번 있었다. 첫 번째는 1945년 패전 직후, 두 번째는 1948년 도쿄재판 판결 직전, 세 번째는 1951년 강화조약 조인 직전이다.(井崎正敏 『天皇と日本人の課題』 洋泉社 2003. 131-133p.)

그에 비해, 아시아 각지에서 진행된 전범재판에서 23명의 한국인이 BC급 전범으로 교수형과 총살형에 처해졌다. 타이완인의 경우에는 26명이 사형되었다. A급 전범이 ‘특정의 지리적 제한을 두지 않으며, 또한 연합국 정부의 공동결정에 의해 처형된 범죄인’이었던 것에 대해, BC급 전범은 일본제국주의가 점령했던 소위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각지에서 열린 전쟁범죄 재판의 법정에서 처벌된 전범을 가리킨다. BC급 전범에 대한 재판은 일본을 포함하여 아시아 49개국에서 열려, 용의자로 체포된 사람은 25,000명 이상에 달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5,700명이며 그 중에서 사형이 984명이었다. 이 중에는 한국인 148명이 포함되어 23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한국인 전범 148명 중에 군인은 3명 뿐이었고(이 중에 필리핀 포로수용소장이었던 洪思翊 中將이 있다), 나머지는 전원이 포로수용소 감시원으로 징집된 군속(軍屬)이었다. 이들은 서양인 포로들을 경멸하는 일본군과 포로가 되어서도 당당한 서양인 포로들 사이에서 직접 감시 임무를 담당했으므로, 이들 포로들의 일본군에 대한 불만이 감시자인 한국인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식민지 전 기간을 통하여 단 한 번도 일본제국주의의 국적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식민지 한국인이 ‘일본인으로 간주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이다. 여기에서도 일본제국주의의 ‘억압이양(抑壓移讓)’의 무책임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의 전쟁에서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일본군의 포악한 만행은 그 책임의 소재는 어쨌든, 직접적인 하수인은 일반병사들이라는 처참한 사실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국내에서는 ‘별 볼일 없는’ 인민이며, 군대에서는 가장 밑바닥의 이등병이라도 일단 외국에 나가면, 황군(皇軍)으로서의 구극적(究極的) 가치와 연결됨으로써 한없는 우월적 지위에 서려 한다. 시민생활에 있어서나 군대생활에 있어서나 압박을 이양(移讓)할 장소를 갖지 못하는 대중(大衆)이 일단 우월적 지위에 서게 되면, 자신에게 가해지는 모든 중압감을 단번에 풀어버리려는 폭발적인 충동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²⁸⁾

식민지 전 기간 동안 한국인은 일본인에 의한 차별과 억압에 시달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한국인이 포로 감시원이 되었을 때, 일본제국주의의 ‘억압이양’의 희생양이 된 결과가 이들 한국인 전범이었던 것이다.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일본은 미국이 설정한 전쟁범죄에 관한 규정(제11조)²⁹⁾을 수락했다. 이 규정에는 ‘도쿄재판’과 아시아 각지에서 열렸던 군사재판에서의 판결을 일본 정부가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조약에 의

28) 丸山真男 ‘超国家主義の論理と心理’ 『現代政治の思想行動』 未來社 1988. 26p.

29) 이석우 『일본의 영토 분쟁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인하대출판부, 2003. 112p.

해 일본의 전쟁범죄자 처벌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것이 되었고 또한 일본인의 전쟁범죄자 처벌은 종료된 것이 되었다.

일본인의 전쟁책임 망각현상은 원폭이 투하된 히로시마(広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소위 ‘평화공원(平和公園)’을 만들어 놓고, 세계제2차대전에서 자신들이 오히려 원폭 피해자라는 가치전도현상을 확산시켰다.

전후 일본은 일본인 스스로에 의한 전쟁범죄자의 처벌과 전쟁책임의 추궁을 망각한 채, 전쟁에 대한 피해자의식만을 증식시키는 전후를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7. 맺음말

일본의 군국주의 과시즘의 전쟁논리는 ‘팔굉일우(八紘一宇)’에 기반을 둔 침략과 시혜의식(施惠意識)의 확대였다. 일찍부터 동양의 보편성으로부터의 탈출을 선언한(福沢諭吉, ‘脱亜論’) 일본제국주의는 일본민족의 우월성과 지도성을 주장하며, 그 확대 과정을 소위 ‘아시아의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계속하였다.

그 연장선 상에서 소위 ‘신체제(新体制)’의 선언으로 군국주의 과시즘을 성립시킨 일본제국주의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여 식민지 한국을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총동원(總動員) 통치시대’를 열어, 갖가지 형태로 민중을 조직화하고 한국인에 대한 인적(人的)·물적(物的) 착취와 동원을 자행했다. 그리하여 식민지 한국은 ‘대륙병참기지’에서 ‘대동아병참기지’로의 역할을 강요당했다.

특히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전선이 중국 동북지방에서 중국 본토, 동남아시아, 태평양으로 확대되자, 1943년 8월 징병령을 공포, 1944년 4월부터 특별연성소에서 훈련을 받은 청년들을 포함하여 징병 대상자에 대한 징병이 강행되었다.

또한 일본 군국주의 과시즘은 일본인의 도덕률인 소위 ‘국체의 명징’을 식민지 한국에 그대로 이식, 군사력에 의한 지배와 피지배라는 힘의 논리를 도덕적 합리화로 포장하여 한국인의 정신 내면까지를 동화시키려 했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게 하기 위한 통치방침, 소위 ‘내선일체’와 ‘황민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이렇게 일본제국주의의 각종 동원령, 지원병제, 징병제, 징용(徵用), 강제연행으로 동원된 한국인들은 아시아 각국에서 열린 전범재판에서 BC급 전범으로

몰려 148명이 재판을 받았고 23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한국인 전범은 전원이 포로수용소 감시원으로 징집된 군속(軍屬)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후 일본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 및 전쟁책임과 전후책임을 망각한 채, 전쟁에 대한 피해자의식만을 증식시키는 전후를 지내고 있다.

【参考文献】

- 이석우 『일본의 영토분쟁과 샌츠란시스코평화조약』 인하대출판부.2003. 112p.
- 精神文化研究院 『1995년 해외 희생자 유해현황 조사사업 보고서』 精神文化研究院, 1995.81~82p.
- Adolf Hitler(平野一郎 外訳) 『我が闘争』 1, 2, 3. 黎明書房, 1961.
- Alfred Rosenbnberg(丸山仁夫 訳) 『二十世紀の神話』 三笠書房, 1938.
- Rudyard Kipling. “The Whitemen’s Burden : The United States & Philippine Islands, 1899.” Rudyard Kipling’s Verse : Definitive Edition(Garden City, New York : Doubleday, 1929).
- 丸山真男 ‘軍国支配者の精神形態’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未来社 1988. 26p. 98p. 301p.
- 伊藤隆 『近衛新体制』 中公新書 中央公論社 1983. 214p.
- 朝鮮總督府情報課 『新しき朝鮮』 朝鮮行政協會 1944. 27~28p. 42~43p. 51p. 50~51p.82p.
- 京城日報社刊 『朝鮮年鑑』 京城日報社, 1944. 64p. 288p.
『半島学徒出陣譜』 京城日報社, 1944. 75~76p.
-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 朝鮮總督府 1940. 803p.
- 橋本文三 『増補日本浪曼派批判序説』 未来社,1978. 43p.
- 栗屋憲太郎 『東京裁判論』 大月書店, 1994. 26~27p. 201p.
- 井崎正敏 『天皇と日本人の課題』 洋泉社 2003. 131-133p.
- 文部省 『国体の本義』 文部省 1937. 9p.
- 大日本帝国学士院編纂 『皇室制度史』 第一卷 大日本帝国学士院 1937. 126p.
- 草野茂松編 『蘇峰文選』 民友社, 891p.
- 梁村奇智城 『国民精神總動員運動と心田開發』 朝鮮研究社 1939. 75~78p.
- 内海愛子 『朝鮮人BC級戦犯の記録』 勁草書房, 1982.
- 内海愛子, 村井吉敬 『赤道下の朝鮮人叛乱』 勁草書房, 1987.
- 『總動員』 第1卷 3号, 1939. 21p.
- 『コギト』 1934. 12月号, 40~41 p.
- 『朝光』 1942. 9月号. 27~29p.

要 旨

日本の軍国主義ファシズムの戦争論理は‘八紘一宇’に基盤を置く侵略と施恵意識の拡大であった。早くから東洋の普遍性からの脱出を宣言した(福沢諭吉, ‘脱亜論’)日本帝国主義は、日本民族の優越性と指導性を主張しながら、その拡大過程を所謂‘アジアの解放’という名前で戦争を続けた。その延長線の上に所謂‘新体制運動’で軍国主義ファシズムを成立させた日本帝国主義は、1938年‘国家総動員法’を公布して植民地朝鮮を日本帝国主義侵略戦争に駆り出す為に‘総動員統治時代’を開き、あらゆる形態で民衆を組織化し、朝鮮人に対する人的・物的搾取と動員を強行した。そして、植民地朝鮮は‘大陸兵站基地’から‘大東亞兵站基地’としての役割を強要された。

特に、1941年に太平洋戦争の勃発で戦線が中国の東北地方から中国本土、東南アジア、太平洋に拡大するにつれ、1943年8月徴兵令を公布、1944年4月から特別錬成所で訓練を受けた青年たちを含め徴兵対象者に対する徴兵が強行された。

また、日本軍国主義ファシズムは、日本人の道德律である‘国体の明徴’の論理を植民地朝鮮にそのまま持ち込み、軍事力による支配と被支配という力の論理を道德的合理化で飾って朝鮮人の精神内面までを同化させようとしたのであり、これを可能にしようとして‘内鮮一体’と‘皇民化’政策を一貫して推進した。

こうして、日本帝国主義の各種の動員令、志願兵制、徴兵制、徴用、強制連行、進んでは従軍慰安婦という名で動員された朝鮮人はアジア各地で開かれた戦犯裁判で、BC級戦犯として裁かれ、148名が裁判を受けてそのうち23名が死刑に処せられた。朝鮮人戦犯は全員が捕虜収容所の監視員として徴集された軍属であった。しかし、戦後の日本は植民地支配に対する戦争責任と戦後責任を忘却して、むしろあの戦争に対する被害者意識だけを内在化しつつある。

キーワード：八紘一宇、総動員、兵站基地、国体、内鮮一体、
皇民化、戦犯、戦争責任

투 고 : 2007. 5. 31
1차 심사 : 2007. 6. 9
2차 심사 : 2007. 6. 30

住 所 : (136-714) 동덕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일본어학과
電 話 : 02-2299-9872
e-mail : chung51@dongduk.ac.kr